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□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 안녕하십니까? 이효원 의원입니다.
- □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□ 현재 「문화예술교육지원법」에서는 학교예술강사의 정의 및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학교 예술강사들이 안정적으로 학 교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□ 이에 본 조례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교예술강사를 명시하고 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1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성평등을 실현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.
- □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